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,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하며, 제14조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약정서 기재사항)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위탁일
2. 납품하는 시기·장소
3.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
4.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, 그 원재료 등의 품명·수량·제공일·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

5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

제14조의6(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(이하 “연동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에 따

라 그 담당 사업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
2.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3.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

③ 연동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
2. 전담조직 보유 현황
3. 전담인력 보유 현황
4. 시설 명세서

5.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법 제22조의4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⑦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준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

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,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28조제1항의 분쟁의 조정 요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벌점의 부과
2.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시정명령
3.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

제27조의2제1호 중 “제14조의2”를 “제14조의3”으로 한다.

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약정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·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연동지원본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14조의6제6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고,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사유	근거 법조문	지정취소·업무정지 명령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2조의 4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	법 제22조의 4제4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2조의 4제4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(약정서 기재사항)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위탁일</u> <u>2. 납품하는 시기·장소</u> <u>3.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</u> <u>4.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, 그 원재료 등의 품명·수량·제공일·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</u> <u>5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</u>
<u>제14조 ~ 제14조의4 (생략)</u>	<u>제14조의2 ~ 제14조의5 (현행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와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6(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</u>

지원본부(이하 “연동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에 따라 그 담당 사업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
2.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3.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

③ 연동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

2. 전담조직 보유 현황

3. 전담인력 보유 현황

4. 시설 명세서

5.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
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
획서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
22조의4제1항에 따라 연동지원
본부를 지정하거나, 같은 조 제
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
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
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
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
시하여야 한다.

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기
관 또는 단체는 매년 1월 31일
까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
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중소벤처
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⑥ 법 제22조의4제4항 및 같은
조 제5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
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
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⑦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

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
 ② (생략)
<신설>

제2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

준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

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
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,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28조제1항의 분쟁의 조정 요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벌점의 부과
2.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시정명령
3.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

제2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

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<u>제14조의2</u>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: 2016년 1월 1일 2.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<u>제14조의3</u>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908